

예산총칙

2021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82,530,614	14,475,918
일반회계	474,001,785	14,220,054
특별회계	8,528,829	255,865
기타특별회계	8,528,829	255,865
상수도특별회계	2,977,101	89,313
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	1,216,338	36,49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890,590	26,718
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	3,188,800	95,664
주차장특별회계	210,000	6,30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46,000	1,38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393,226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